

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및 주요지적 사례 안내



목 차

청경^韓
시상

1.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

2.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주요지적 사례

3. 2024년 공공재정환수법 추진 계획

4. 참고사항: 공공재정환수법 입법예고안

5. 질의 응답



1.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

1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목적



2020. 1. 1.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(2020. 1. 1.부터 지급된 모든 공공재정지급금 대상)

**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
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· 관리 체계 확립**



“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”

2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요약



공공재정환수법 =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

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 하면?



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



공공재정지급금 정의

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
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

법 제2조 제5호

보조금 보상금 출연금



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
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시행령 제2조

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,
고용촉진지원금, 공익직접지불금,
국가장학금, 기초생활보장급여,
장애수당, 한부모가족 복지급여,
보훈급여금



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
고시하는 금품등

4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



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

2020. 1. 1. 이후
최초로 지급된
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
부정청구등부터 적용

부칙 <법률 제16323호, 2019.4.16.>



다른 법률
우선 적용

- 01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
- 02 부정이익등의 환수
- 03 제재부가금 부과
- 04 가산금 및 체납처분
- 05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
- 06 지급 중단, 환수, 제재부가금,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
- 07 명단 공표
- 08 부정청구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

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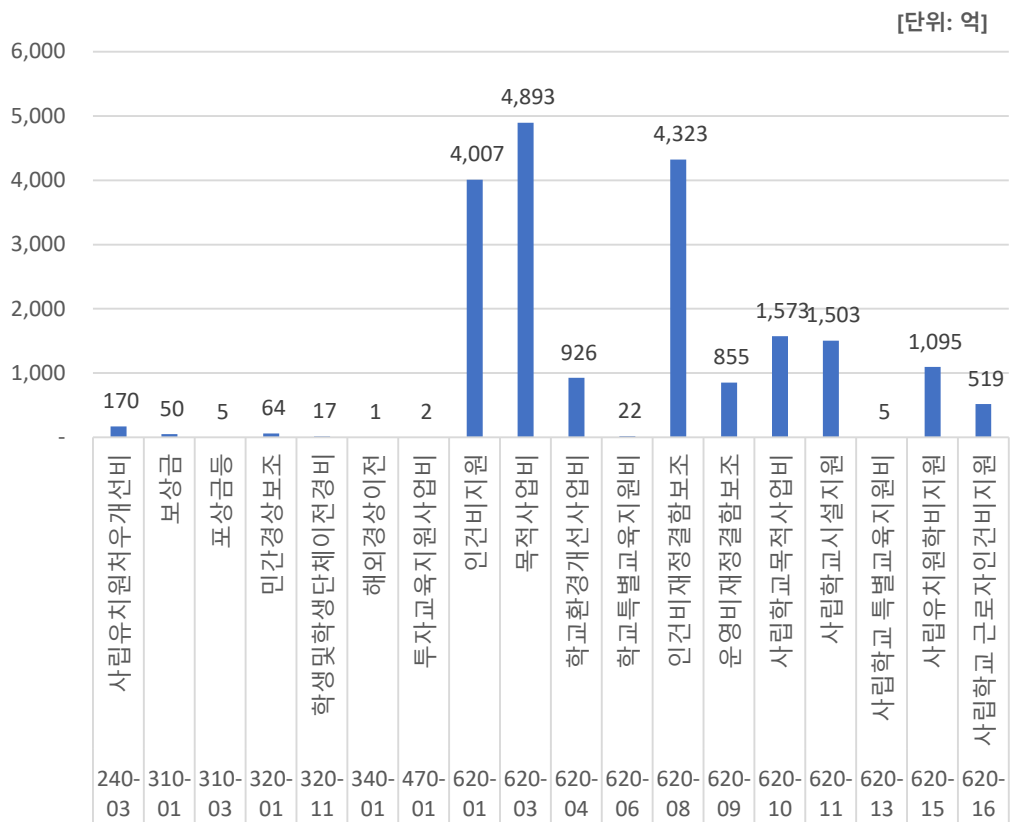
공공재정지급금 범위 및 2023년 본예산 중 공공재정지급금



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(국민권익위원회 고시) 제5조 교육자치단체 소관

교육자치단체 소관		
01	240-03	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
1-2	310-01	보상금
02	310-03	포상금등
03	320-01	민간경상보조
04	320-07	이차보전금
05	320-11	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
5-2	320-14	민간자본보조
06	340-01	해외경상이전
07	350	출연금
08	470-01	투자교육지원사업비
09	620-01	인건비지원
10	620-03	목적사업비
11	620-04	학교환경개선사업비
12	620-06	학교특별교육지원비
13	620-08	인건비재정결함보조
14	620-09	운영비재정결함보조
15	620-10	사립학교목적사업비
16	620-11	사립학교시설지원
17	620-13	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
18	620-15	사립유치원학비지원
19	620-16	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

2023년 본예산



6 부정청구등 유형



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

허위
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
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과다
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
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목적외
사용
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
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

오지급

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7 부정청구등에 따른 제재 처분

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

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 사용

제재부가금
부과
x 최대 5배

고액부정청구등
행위자
명단공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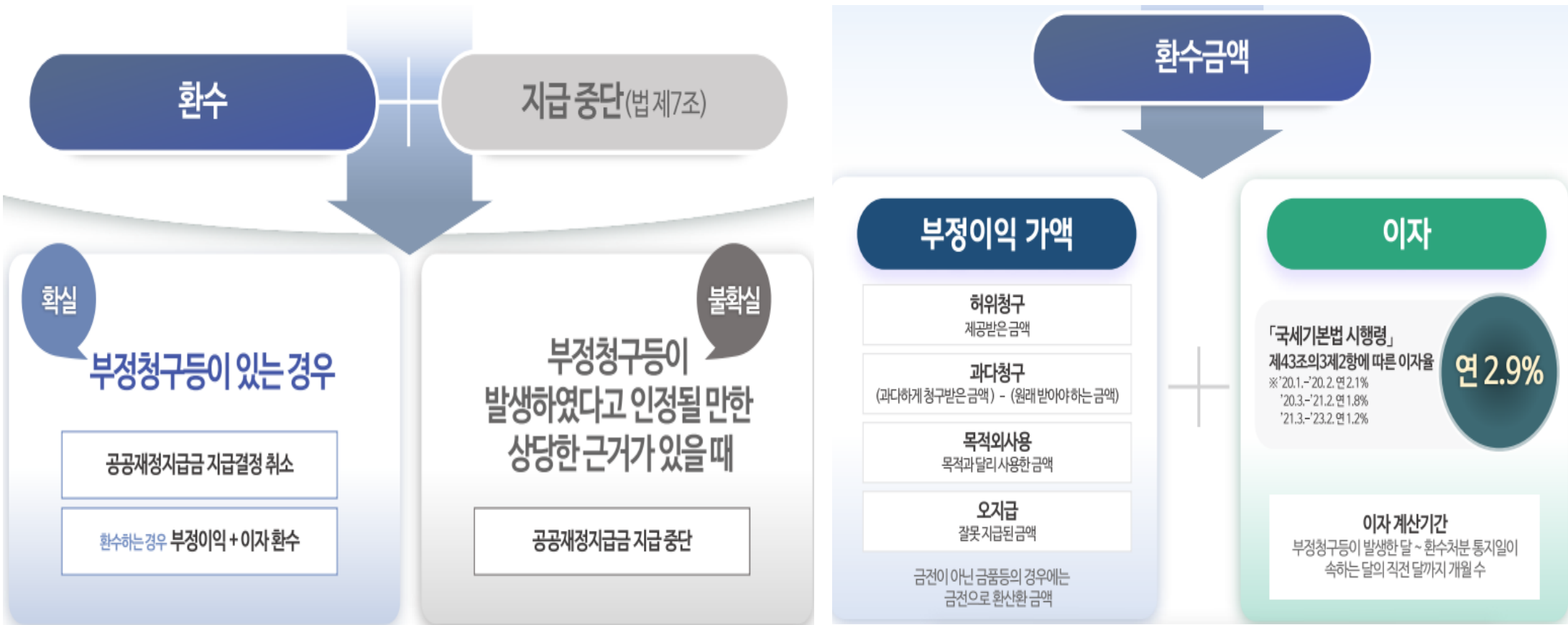
법의실효성
확보장치

부정이의
환수
+이자포함

8 부정이익등의 환수



부정이익등 환수 및 지급중단



9 제재부가금 감면사유 및 적용배제 사유



제재부가금: 부정이익등 환수에 추가하여 부가하는 금전적 제재

행정청 사전통지 전
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,
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

제재부가금
면제

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
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
벌금·과료, 몰수·추징,
과징금·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

제재부가금
감경·면제

환수금액이 과거 3년간 누적하여 100만원이
안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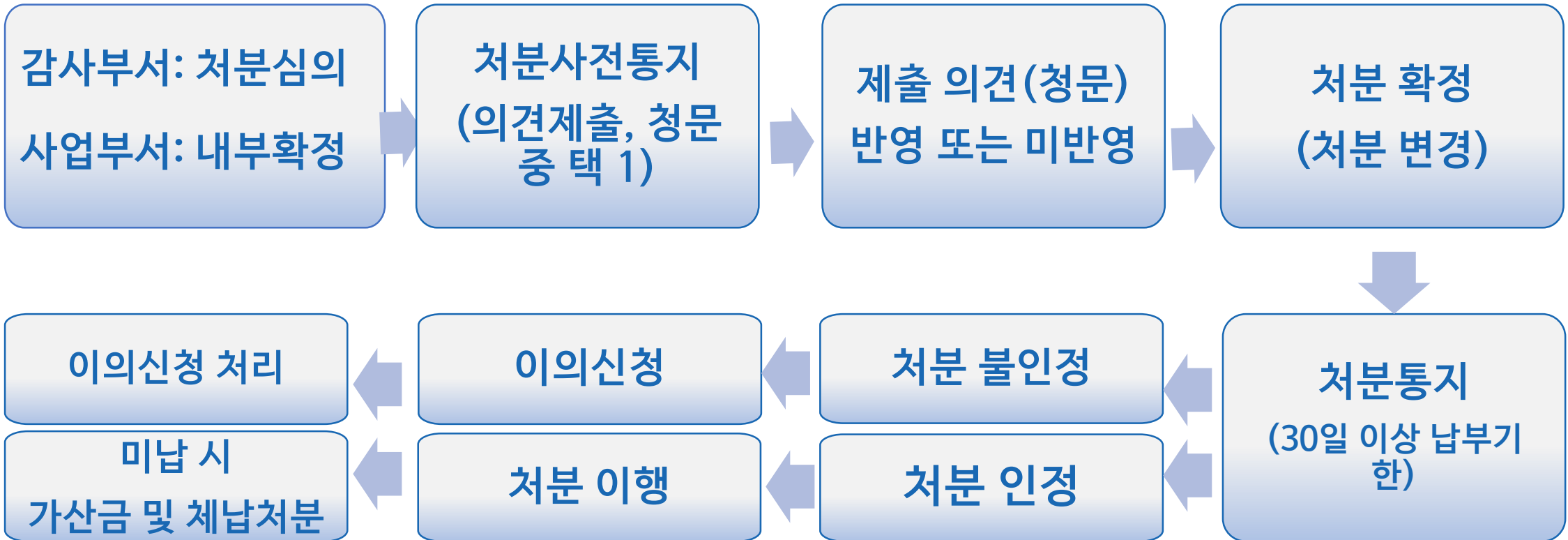
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로 부정수
익자가 지체 없이 반납한 경우

제재부가금
적용 배제

10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



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처분 절차



11 가산금 및 체납처분



절차

부정이익
또는
제재부가금
미납시

가산금 징수

1주일 이내 납부 체납금액 X 1%

1개월 이내 납부 체납금액 X 2%

1개월 이후 1개월마다 1% 가산

*단, 이자율 5% 및 징수기간 60개월 초과 불가

체납처분

국세체납처분의예
「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」

독촉



2.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주요지적 사례

1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



Q. 공립학교 행정실 직원의 공공재정지급금 횡령 사실 적발 시

A.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주체는 교육청, 지급받은 주체는 학교임

학교는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정해진 목적 외

사용이 아니므로, 공공재정지급금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움

단, 형법 등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함

1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



**Q. 교육청, 구청에서 각각 지원한 목적사업비, 보조금이
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**

**A. 목적사업비(620-03), 보조금(308-08)은 공공재정지급금의
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됨**

1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



**Q. 사립학교에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
해당하는지 여부**

**A.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인건비, 운영비 재정부족액을
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됨**

Q. 정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을 계약법에 따라 계약하였을 경우 적용 배제 대상인지?

A.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, 집행 과정에서 수익자인 학교의 부정청구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법 적용 받을 수 있음

2 우리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내용

청렴
시상

Q. 사립교원 호봉획정 잘못으로 환수 사유 발생 시

이자가 부과되는지 여부

A. 잘못 지급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

결산으로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여야 함

2

우리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내용

Q. 공공지급금 관련 서류를 잘못 보고하여 결과적으로

허위, 과다 청구된 경우

A. 보고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정지급금이 결정되므로,

보고 행위는 청구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함

3 감사, 점검 시 주요지적 사례

청렴
세상

1. 허위 청구

- 근무하지도 않은 방과후 강사 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 청구

2. 목적 외 사용

- 전기공사비로 교부된 목적사업비 10,000천원을

실내인테리어 공사 진행

- 고지 금액 계산 예시: 다음 장 참조

사례

A가 '20.2월에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 1,000만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, A에게 '21. 9월에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등 처분 통지*를 내렸습니다.
이때, 행정청이 A에게 고지한 금액은 얼마일까요?

* 다른 법률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규정이 없는 경우임

※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: '20.1.-'20.2. 연2.1% / '20.3.-'21.2. 연1.8% / '21.3. 현재 연1.2%

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: **부정이익** +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*** + **제재부가금**

(*부정이익 가액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)

부정이익 환수 및
제재부가금 부과

부정이익
10,000,000원



이자
257,500원



제재부가금
20,000,000원



총 납부금액
30,257,500원

이자 계산

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 ~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 수 (19개월 = '20.2월 ~ '21.8월)

* 이자 = 부정이익 가액 × 계산기간(개월수) ×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자율 × 1/12(연리)

⇒ 1,000만원 × 1개월('20.2월) × 0.021 × 1/12 + 1,000만원 × 12개월('20.3월-'21.2월) × 0.018 × 1/12
+ 1,000만원 × 6개월('21.3월-'21.8월) × 0.012 × 1/12 = 17,500원 + 180,000원 + 60,000원 = 257,500원

제재부가금 부과

법 제2조제6호다목, 영 제3조제2항제3호, 별표1 제재부가금(2,000만원) = 부정이익 가액(1,000만원) × 2배(목적외 사용)

3 감사, 점검 시 주요지적 사례



3. 오지급의 경우

- (공통)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 지급
- (사립) 기간제교사, 사무직원 등 호봉 획정을 잘못하여 급여 과다 지급
- (사립)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데도 부양가족수당 잘못 지급
- 고지 금액 계산 예시

A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잘못으로 20. 3~20. 7월까지 613,790원을 과지급한 사실을 지적하여 23. 3월에 처분 통지
 ※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: 20.3.~21.2. 연1.8%, 21.3.~23.2 1.2%

부정이익 613,790	+	이자 23,621	=	총 납부금액 637,411
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

※이자 계산

월	부당 이익	이자율		부과이자		이자
		1.80% (20. 3.~21. 2.)	1.20% (21. 3.~23. 2.)	20. 3.~ 21. 2.	21. 3.~ 23. 2.	
2020.3	101,800	12	24	1,832	2,443	4,275
2020.4	101,800	11	24	1,679	2,443	4,122
2020.5	101,800	10	24	1,527	2,443	3,970
2020.6	101,800	9	24	1,374	2,443	3,817
2020.7	206,590	8	24	2,479	4,958	7,437
계	613,790			8,891	14,730	23,621

부정 이익 환수
 및 제재부가금
 부과



3.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추진 계획



1. 인식 강화

- ▲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본청, 기관(학교) **담당자 연수 등 강화**
 - 기관(학교), 본청 부서 대상 공공재정환수법 관련
연수, 협의회 등 정기적 실시(연 1회)
 - 기관(학교) 담당자 윤리 청렴 의식 제고(분기별 1회 이상)
(회의 시 및 공문 등을 통하여 수시 안내)



2. 점검 강화

▲ 종합감사 필수 점검 및 사안 감사 시 확인 등

- **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**하여 위반사항 지적

(2020년부터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)

- 공공재정환수제도 **세부 처리기준 마련**하여 꼼꼼히 운영
- 공공재정지급금 **이행 자체 점검 강화**(연 2회 정기 및 수시)



4. 공공재정환수법 입법예고안

(강화) 진정한 자진신고가 아닌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를 감면으로 조정

- 수사, 감사, 점검 등을 통해 행정청에서 부정청구를 인지한 경우

<개정 전후 제재부가금 부과 비교표>

구 분	현행	개정안	비교
행정청 인지 전 자진신고	전액 감면	전액 감면	동일
행정청 인지 후 자진신고& 전액 반환	전액 감면	감면 규모 조정	감면 규모 조정
사전 통지 후	전액 부과	전액 부과	동일

2

입법예고안 주요내용



(강화)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, 이자부과 규정이 없으면 공공 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

(강화) 허위, 과다청구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

구 분	형벌
허위청구자 및 허위청구를 알면서도 지급한 자	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
과다청구자 및 과다청구를 알면서도 지급한 자	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

(완화)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시 이자부과 면제

(단, 부과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)



질의 응답 시간



이미 청렴의 대표기관 **경남교육!**

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자부심을

지켜 나가겠습니다.